

## 2026년 KB금융타운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

KB금융지주 ·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북 혁신도시 ‘KB금융타운 공유오피스’ 창업 공간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9일

KB금융지주대표이사 ·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 1 모집개요

- 사업명: 2026 KB금융타운 공유오피스 운영사업
  - 공고명: 2026 KB금융타운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
  - 모집규모: 총 4개사 내외
    - 입주기간: 1년(2026년 5월 입주예정) ※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모집기간: 2026. 4. 9.(목) ~ 2026. 4. 23.(목) 17시 까지
  - 모집분야: 기술기반 산업분야\*
    -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T·소프트웨어, 반도체·전자, 바이오·헬스케어, 기후테크(친환경·에너지, 탄소저감, 자원순환 등), 모빌리티, 로봇·자동화, 핀테크, 우주·항공, 디지털콘텐츠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전반
  - 지원내용
    - 입주공간 사무용 가구 및 공용공간(회의실, 라운지 등) 이용 지원
    - 전문가 교육 및 멘토링 등
- ※ 입주공간 사용료 및 관리비 없음

## 2

### 신청자격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법인 기업(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제외)  
※ 2019년 4월 09일 이후 창업한 법인기업
- 지역요건: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  
①(도내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 지사 또는 부설연구소를 둔 기업  
②(도외기업) 타지역 소재 기업이나, 선정 후 3개월 이내 본사 또는 지사 연구소 설립 가능 기업
- 우대사항(가점): 전북 지역본사 기업, 청년 창업자(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기후테크 기업

## 3

### 입주지원

#### □ 입주공간

- 명 칭: KB금융타운 전북HUB
- 주 소: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44(중동), 엔씨빌딩 4층
- 입지여건: 금융분야 협력기관 접근용이(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금융빅데이터 센터, 금융타운조성(예정) 등)
- 주변환경: 전북테크비즈센터,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농수산대학,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과 근접

구분	전용면적	공간 수
5인실	미정	4개실

※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 지원내용

- 입주공간 사무용 가구 및 공용공간(회의실, 라운지 등) 이용 지원
- 기업수요 맞춤형 멘토링 및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입주기간**

-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공실 발생 시 센터 상황에 따라 수시 모집
- 선정 통보일 기준 1개월 이내 미입주 시 입주자격 취소

□ **입주비용**

- 없음

**4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 신청
  - 온라인 신청 플랫폼: <https://event.jbci.or.kr>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통합 또는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
- 문의: 창업허브팀(063-220-8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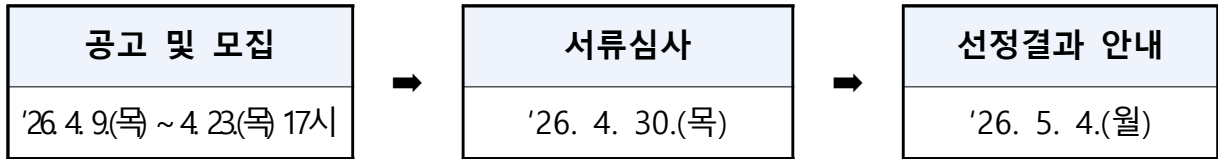
□ **제출서류**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필수	20매 이내 작성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분	증빙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대표자 신분증	필수	-
2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li> <li>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li> <li>③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li> <li>④ 폐업사실증명(폐업 이력 있을 시)</li> </ul>		-
3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2025년도
4	■ 실적자료(매출, 수출, 투자, 벤처, 지식재산권 등)		
5	■ 고용실적자료(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6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선정절차

- 세부일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서류심사를 통해 입주기업 선정

구분	내용
운영방식	· 평가위원 3명 내외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후 평가 시행
심사내용	· 핵심 역량, 성장잠재력, 지역 기여도 등을 평가
가점(10점)	· 본사소재지 전복(3점) · 청년기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3점) · 기후테크 기업(4점)

- 입주계약서 작성 및 입주를 위한 준비사항 개별 안내

## □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입주계약 체결: 2026. 5월 중
- 입주개시: 2026. 5월 중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접수 시 접수처와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
-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신청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주를 무효로 하며, 입주 후에도 입주 취소 및 퇴실될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지원 프로그램(교육 및 멘토링)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끝.

## 참고 1

## 신청제외 대상

###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의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 ○ 신청제외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 현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정부기관 창업보육센터, 공유오피스 입주기업(대표자)

\* 단, 입주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퇴소예정 기업(대표자) 제외

: 현재 입주중인 보육센터, 공유오피스 계약기간이 명시된 입주계약서 증빙 필요

###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舊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조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 ■ 기타 창업보육실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 ■ 기타 KB금융지주대표이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참고 2

##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 □ 창업여부 기준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증여	개인 / 법인	기존의 개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여부 무관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창업	창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창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동종창업	이종창업	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업	
				이종창업	창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일인이 아닌 경우	부도/파산 2년 초과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	불인정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업			

1.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2.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3. “동일인” 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4. “친족” 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5. “자회사” 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6. 중소기업 폐업이후 3년 이후의 동종 업종 개시는 창업 인정(부도·파산 2년)
7.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참고 3****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부동산업	L68
2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3	무도장 운영업	91291
4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5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4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참고